

대통령령 제 호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.

별표 1 제1호라목 중 “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인”을 “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4(대주주의 자격심사 등)	제7조의4(대주주의 자격심사 등)
① ~ ⑤ (생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”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.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⑦ ~ ⑨ (생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